



당신이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에는 28 종류가 있으며, 각각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체류자격의 확인

당신이 일본에 입국해서 체재할 경우에 입국의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에 체류자격의 종류와 체류기한의 기재가 있으므로 확인해 둡시다.

- ① 2005년 3월 11일에
- ② 관광, 친족방문 등 단기간 일본에 체재할
- ③ 체류기간 90일이 허가되어
- ④ 나리타공항 제 2 여객터미널에서 상륙한 것을 의미합니다.

출전: 법무성 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리안내」 팸플릿

허가된 체류자격은 다음 28 종류로 허가된 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1) 취로가 가능한 체류자격 (18 종류)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외교	일본국 정부가 접수할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혹은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혹은 국제관행에 의해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이들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및 그 가족》	「외교활동」을 하는 기간	○
공용	일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혹은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외교」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외국정부의 대사관·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관 등에서 공무로 파견된 사람 등 및 그 가족》	5년, 3년, 1년, 3개월, 30일 또는 15일	○
교수	일본의 대학 혹은 이것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지도 또는 교육하는 활동 《대학교수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예술	수입을 동반한 음악, 미술, 문학 그 외의 예술상의 활동 (「흥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화가, 작곡가, 저술가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종교가가 행하는 포교 그 외의 종교상의 활동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보도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외국의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고도전문직	1 호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다음 「가」에서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일본 학술 연구 또는 경제 발전에의 기여가 기대되는 것. 가.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스스로 경영, 또는 해당 기관 이외의 일본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 활동. 나.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다. 법무대신이 지정한 일본 공적 및 사적 기관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을 행하거나 혹은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과 함께 해당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 호 1 호에 기재한 활동을 행하며, 그 체류가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법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가 행하는 하기 활동. 가.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연구, 연구 지도 또는 교육 활동 나.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다.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을 행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라. 2 호의 「가」에서 「다」 중 하나의 활동과 함께 행하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법률·회계 업무」, 「의료」,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 「기능」의 항에 열거된 활동 (2 호의 「가」에서 「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외.) 《포인트 제도에 의한 고도 인재》	1 호는 5년, 2 호는 무기한	○
경영·관리	일본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을 하거나 혹은 해당 사업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법률·회계 업무」의 항에 열거된 자격이 없으면 법률상 불가능한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기업 경영자, 관리자》	5년, 3년, 1년, 4개월 또는 3개월	○

다언어생활정보



B 체류자격

▲ B 체류자격 의 TOP 으로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법률·회계 업무	외국 법률사무 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의료	의사, 치과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연구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정부 관계기관이나 사기업 등의 연구자》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혹은 설비 및 편성에 있어서 이것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그 외의 교육을 하는 활동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어학교사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기술·인문 지식· 국제업무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의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교수」, 「예술」, 「보도」,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업내 전근」, 「홍행」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통역, 디자이너, 사기업 어학 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기업내 전근	일본의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적 및 사적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해서 전근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행하는 이 표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항의 하란에 열거된 활동 《외국사업소로부터의 전근자》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개호	일본 공적 및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가 개호 또는 개호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홍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홍행에 관련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능활동 (「경영·관리」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선수 등》	3년, 1년, 6개월, 3개월 또는 15일	○
기능	일본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외국요리의 조리사, 스포츠지도자, 항공기 조종사, 귀금속 등의 가공 전문직업인 등》	5년, 3년, 1년 또는 3개월	○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기능실습	<p>1 호 가.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 (제 1 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강습을 받고, 또한 기능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나.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 (제 1 호 단체관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강습을 받고, 또한 기능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p> <p>2 호 가.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제 2 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나.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제 2 호 단체관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p> <p>3 호 가.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제 3 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나. 기능실습법상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제 3 호 단체관리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함.)에 의거하여 행하는 기능 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p>	<p>1 호 법무대신이 각각 지정한 기간(1 년을 넘지 않는 범위)</p> <p>2 호 법무대신이 각각 지정한 기간(2 년을 넘지 않는 범위)</p> <p>3 호 법무대신이 각각 지정한 기간(2 년을 넘지 않는 범위)</p>	○



(2) 취로를 할 수 없는 체류자격 (5 종류)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문화활동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혹은 예술상의 활동 또는 일본 특유의 문화 혹은 기예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을 수득하는 활동(「유학」의 항에서 「연수」의 항까지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일본문화의 연구자 등》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단기체류	일본에 단기간 체류해서 행하는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합에의 참가, 업무연락 그 외 이것에 유사한 활동 《관광객, 회의 참가자 등》	90일, 30일, 또는 15일 이내의 날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유학	일본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고등부, 중학교(중등교육학교 전기 과정을 포함.)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중학부, 초등학교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부, 전수학교 혹은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있어서 이것들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교육을 받는 활동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 등의 학생>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연수	일본의 공적 및 사적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져 행하는 기술의 습득을 하는 활동(「기능실습 1호」의 항 및 「유학」의 항에 열거된 활동을 제외) 《연수생》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가족체류	「교수」에서 「문화활동」까지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자(「기능실습」을 제외.) 또는 「유학」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체류 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자녀》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또는 3개월	×



(3) 개개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허가내용에 따라 취로의 가부가 정해지는 체류자격 (1 종류)

체류자격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당 직업의 실례 등>	체류기간	취로
특정활동	법무대신이 개개의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 <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연계협정에 준거한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 등>	5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개로 지정하는 기간(5년을 넘지 않는 범위)	○

(4)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체류자격 (4 종류)

체류자격	일본에서의 신분 또는 지위	체류기간	취로
영주자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은 자(입국관리 특례법의 「특별영주자」를 제함.>	무기한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 89호) 제 8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양자 또는 일본인의 자식으로서 출생한 자 <일본인의 배우자·친자식·특별양자>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
영주자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자 혹은 평화조약관련 국적이탈자 등 입관특례법에서 정하는 특별영주자(이하, 「영주자 등」이라 칭함.)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 등의 자식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친자식>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
정주자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한 자 <제 3 국정주난민, 일본계 외국인 3세, 중국 잔류 일본인 등>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개로 지정하는 기간(5년을 넘지 않는 범위)	◎

(주) 「취로」란의 표시내용 :

- ◎:취로에 제한 없음
- :일정범위에서 취로가능
- x:취로불가

참고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체류자격 일람표」